

당 헌

[제정 2020. 2. 21]

[개정 2023. 8. 29 일부개정]

[개정 2023. 9. 14 일부개정]

[개정 2023. 10. 2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내일로미래로라 한다.

제2조(목적) 내일로미래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인권과 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하여,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진영정치와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내일로미래로는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은 수도에, 각 시·도당은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 시·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4조(지지기반과 역할) 수도권과 충청, 대전, 세종지역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창당한 내일로미래로는 충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통합 정치를 실현하기 하기 위하여 전국당 조직을 적극 활성화 한다.

제2장 당원

제5조(자격) ①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 당원의 지위에 관한 사무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입당,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제6조(전 당원 투표) ①모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1.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의 선출
2. 최고위원의 선출
3.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4. 당의 합당 및 해산 등 중대한 사안
5.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

②전당원투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권리)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중요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7.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8.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②당원 권리 행사의 요건, 절차,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
3.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당원교육을 받을 의무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의무
6.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②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①당은 여성, 청년(이하 만 50세 이하를 “청년”이라 한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 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30%, 청년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그밖에 노인,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대통령인 당원) ①대통령인 당원은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할 수 없다.

②대통령인 당원은 당론을 존중하고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인 당원은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 대하여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그 공로를 반영한다.

②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명, 직무정지, 당원 권리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당 기구

제1절 전국당원대표자대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전당대회”를 둔다.

②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상임대표
2. 공동대표
3. 최고위원
4. 상임고문 및 고문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중앙당 주요당직자
7. 지역위원장
8. 당 소속 광역단체장
9. 당 소속 기초단체장
10. 당 소속 광역의원
11. 당 소속 기초의원
12. 전직 국회의원, 전직 장·차관, 전직 시·도지사로서 당원인 자

13.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14. 정책연구원장, 부원장, 연구위원, 연구원
15. 전국위원회 위원장
16. 중앙 상설위원회 위원장
17. 독립기구 위원장과 위원
18. 상임대표 직속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19. 전국위원회별 추천 20명 이내의 당원
20. 중앙 상설위원회별 추천 20명 이내의 당원
21.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지역위원회별 당원 3명
22. 당 소속 보좌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당 소속 국회의원 수의 2배 이내의 보좌진
23. 기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50명 이내의 당원
③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전당대회가 2년 이내에 실시 될 경우는 정기 전당대회 개최 이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기능과 권한) ①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대통령후보자·상임대표·공동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전당대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모두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임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④ 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전 5일까지 이를 공고한다.

⑤ 전당대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의장단) ① 전당대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 대표당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의장은 선출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지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의결) ① 전당대회의 안건은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행할 수 없다.

③ 정당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전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전당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 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무위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를 둔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를 당무위원으로 한다.

1. 상임대표
 2. 공동대표
 3. 최고위원
 4. 상임고문 및 고문
 5. 전당대회 의장
 6. 당 소속 국회의원 약간명
 7. 사무총장
 8.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장. 이 경우 추천되는 지역위원장의 정수는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총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9. 당 소속 광역단체장
 10. 최고위원회에서 추천한 약간명
- ⑤당무위원회의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 ⑥당무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강정책·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개정과 폐지
3.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4. 전당대회 소집요구
5. 최고위원 7인 및 궐위된 최고위원 선출

6.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한 안건의 처리
7. 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8.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정당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당 창당의 승인 및 정당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취소
10. 전 당원투표 실시 안건의 심의·처리
11.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의·처리
12.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소집과 의결정족수) ①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당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당무위원회의 소집,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회

제21조(지위와 의무) ①상임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상임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공동대표는 상임대표와 당의 제반업무를 합의 처리하며, 상임대표의 궐위시 공동대표가 당을 대표한다.

제22조(상임대표의 권한) 상임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최고위원 7명 지명
3.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4. 사무총장 임명
5.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6.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7.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23조(상임대표의 선출) ①상임대표와 공동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②최고위원 7인은 당무회의에서 선출한다.
③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 7명을 지명한다.
④상임대표와 공동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제24조(임기)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 상임대표가 지명하는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당대표의 궐위) ①상임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공동대표, 원내대표 순으로 상임대표직을 승계한다.
②승계한 상임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6조(권한대행) 위의 제25조에 의거 상임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선출직 최고위원의 궐위) ①제23조 제2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내일로미래로

이 제25조 제1항에 의해 상임대표직을 승계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선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상임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의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상임고문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으며, 상임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 등은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상임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상임대표 직속 위원회) ①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해 상임대표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상임대표 직속 위원회로 통합개혁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복지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저출산 대책위원회 등을 두며, 각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상임대표 직속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최고위원회

제30조(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으로 15인 이내로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상임대표
 2. 공동대표
 3. 제23조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최고위원 7인.
 4. 상임대표가 최고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은 7인.
- ④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로 한다.

제31조(기능과 권한) ①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주요 당무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3. 당무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4.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
6. 공직선거후보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의 추천, 승인에 관한 의결
7.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8.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제32조(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최고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②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상임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③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전국위원회

제33조(전국위원회) ① 대한민국의 각 사회적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여 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각 부문 전국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전국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여성위원회
2. 전국시니어위원회
3. 전국청년위원회
4. 전국장애인위원회
5. 전국직능위원회
6. 전국대학생위원회

④ 전국여성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전국시니어위원회, 전국장애인위원회, 전국직능위원회,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대표가 공동대표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⑦ 전국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하여 당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⑧ 상임대표는 당세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공동대표와 협의를 거쳐 제3항 각 호 이외의 전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⑨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중앙당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34조(중앙당 상설위원회) ① 중앙당에 다음 각 호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인권위원회
2. 인재영입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국방안보위원회
5. 외교통일위원회

6. 대외협력위원회
7. 재외국민위원회
8. 사회적경제위원회
9. 법률위원회
10. 농어민위원회
11. 노동위원회
12. 지방자치분권위원회
13. 다문화행복위원회
14. 나눔과 봉사위원회
15. 공정한 지방정부 만들기 위원회

- ②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 ③ 당무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상임대표는 제1항의 상설위원회 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각 상설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특별위원회) 상임대표는 특정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당의 지지도 확대 등을 위하여 공동대표와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절 당무집행기구

제36조(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 사무처를 둔다.

제37조(당무집행기구) ① 중앙사무처에 중앙 및 시·도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부총장을 두며, 그 아래에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대표 직속으로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을 둔다.

- ③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 대변인은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 ④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당무집행기구의 구성,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38조(인사위원회) ①사무처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무처당직자의 복무 및 임면절차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정치연수원

- 제39조(정치연수원) ①당원 및 지지자의 정치역량 함양과 예비정치인 양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교육을 위하여 정치연수원을 둔다.
- ②정치연수원에 원장 1명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상임대표가 공동대표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③당은 매년 정치 연수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공직후보자 추천과 당직자 인사 시 연수 평가의 결과를 반영한다.
- ④정치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시 · 도당

제1절 시 · 도당 당원대표자대회

- 제40조(시 · 도당대회의 구성) ①시·도당의 최고의 결기판으로서 “시·도당대회”를 두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7.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8.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9.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당원
 10.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당원
- ② 시·도당대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기능과 권한) ① 시·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위원장 선출
 2. 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3. 시·도당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4.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처리
 5. 시·도당규약제정. 다만, 당헌·당규와의 충돌여부가 문제될 경우 중앙당 법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6.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 ②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시 · 도당 운영위원회

제42조(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수임 및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2. 당 소속 시·도지사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지역위원장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6. 시·도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7.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8.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9. 수석부위원장
10. 시·도당 사무처장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기능과 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의 심의·처리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처리
3.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시·도당 윤리위원회 및 위원의 임명에 대한 의결
5. 중앙당이 위임한 사항
6. 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7. 기타 시·도당의 당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절 시 · 도당 위원장과 집행기구

제44조(위원장)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대회의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대표회의 의결로 기한을 정하여 시·도당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석부위원장과 포함한 약간 명의 부위원장들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시·도당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사무처 등) ① 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② 시·도당에 상설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시·도당 사무처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지역위원회

제46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지역 당원들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이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2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④ 지역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당무를 통할한다.

제5절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제47조(구성 및 기능) ① 원외 지역위원회의 활성화와 지역위원장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 대표 1명과 부대표 약간 명을 둔다.

③ 협의회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대표 등의 선출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48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49조(기능과 권한) ①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당의 원내 대책과 전략의 심의·의결
2. 국회제출 법안 등 의안 중 주요쟁점사항의 심의·의결
3.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4. 원내대표의 선출
5.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6.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8.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9.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
10.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국회의장, 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0조(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 중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제51조(의원총회 소집) ①의원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의원총회 개의 1일 전 까지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회의) ①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있다.

④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당대표 및 고문 등은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3조(의결) ① 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이 비밀 투표를 요구할 경우 의장은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③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54조(당론) ①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②당 소속 의원은 국회 표결 시 당론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당론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경우 이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명, 윤리, 종교 등에 관한 사항은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55조(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56조(선출 및 임기)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선출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권한) ①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3.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4. 기타 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제1항 제2호의 권한행사 시에는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③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수석부대표,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8조(원내부대표 등) ①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②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제59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④ 원내대책회의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60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정책을 입안 및 심의하고 정책 현안 대응 등을 위하여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임명하는 의장과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에 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기능과 권한) ①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예산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당·정간의 정책협의 또는 검토업무
4. 정책 민원업무의 처리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제1호, 제4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물은 원내대책회의의 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정책위원회 의장 등) ①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는 의장과 정책조정을 위한 수석부의장 및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책위원회의 주재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3. 당·정협의 업무총괄·조정
4.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③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은 당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 ④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장 공직후보자의 선출

제1절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의 설치

제63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 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3명은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 ③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64조(후보자 추천원칙) ① 당은 당의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되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전략 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경선으로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구체적인 추천관리방식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선거후보자는 당원에 의한 경선으로 선출한다.

- ②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경선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대통령후보자의 지위) ①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후보
내일로미래로

자는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당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7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8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상임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비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후보자 추천기준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 공천 관리위원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관장하되 제68조 및 제69조 제2항을 준용하며, 최종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비례대표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1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 ①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정치신인의 정치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 시 여성, 청년, 장애인, 정치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거대책기구

제72조(선거기획단)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선거대책기구) ①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무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 ③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정책연구원

제74조(정책연구원의 설치와 기능) 당의 정강·정책의 실현,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정책 연구원을 설치·운영한다.

제75조(정책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①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인 연구를 위하여 인사와 조직의 독립성을 갖는다.

②연구원의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여 연구원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③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당과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④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장 독립기구

제1절 윤리위원회

제76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당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원의 포상과

징계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77조(구성과 임기) ①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② 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포함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되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③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관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8조(중앙당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① 중앙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의 윤리규범 제정과 개정, 교육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당원과 당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원의 징계와 권리회복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윤리규범에 관한 상담이나 위반신고의 처리 등
5. 당무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6. 시·도당윤리위원회에 대한 감독
7. 징계에 대한 재심
8. 기타 당헌·당규에 명시된 권한

② 중앙당윤리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7호에 따른 중앙당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79조(시·도당윤리위원회의 권한) 시·도당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외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다만, 당무위원 및 중앙당 소속 당직자의 징계는 제외한다.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제2절 당무감사위원회

제80조(당무감사위원회) ①당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당무감사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당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당무감사위원회는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 5명의 당무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는 당외 인사로 한다.

④당무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제81조(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①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활동을 평가한다.

③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회계

제82조(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83조(예산결산위원회) ①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임명하는 총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예산집행기구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③예산결산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④기타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4조(회계감사) ①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의 회계전문가 1명을 회계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85조(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 국고보조금의 회계내역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에 그 감사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

제10장 당헌개정

제86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87조(의결절차) ①전당대회 의장은 당헌 개정안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8조(개정당헌의 공포) 당헌 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상임대표는 자체 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89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0조(대표자 변경과 합당시 관련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중앙당 또는 시·

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련서류와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1조(표결) ①모든 의안은 당현·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다만,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경우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인사에 관한 표결은 당현·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출석자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표결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92조(비상대책위원회) ①상임대표가 궐위되거나 공동대표와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⑤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공동대표와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대표와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임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⑥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되어 차기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3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3년 10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상임대표, 공동대표, 원내대표, 전당대회 의장 등의 선출 및 임기애 관한 특례) ①상임대표와 공동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전당대회 의장 등은 제2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의추대 방식으로 선출한다.

제3조(당무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 ①제18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당무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임대표가 추천한다.

②전당대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①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당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상임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